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. 8. 24 선고 2017가단2093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8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공주시 E 임야 4,191㎡ 지상 별지1.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
부분 조립식 판넬 지붕 창고 12㎡ 및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5의 각 점을
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6㎡ 중 각 별지2. 목록 기재 각
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고,

나. 위 창고와 단층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각 토지 중 별지2.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
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도영오

별지